

# 검 토 보 고 서

건 명	논산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		
의안번호	제175호	제 출 자	서승필 의원 외 4명
제 출 일	2022. 11. 14.	회부연월일	2022. 11. 14.

## 1. 제안이유

- 논산시민의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한글 사랑과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함.

## 2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(안 제1조~제3조)
- 한글사랑의 추진계획 수립·시행 (안 제4조)
- 공문서의 작성 및 공공행사, 광고물 등의 한글표시(안 제5조~제7조)

## 3. 검토의견

- 이 조례는 논산시민의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한글 사랑과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
-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, 「국어기본법」 제6조, 제7조, 제13조, 제14조, 「국어기본법 시행령」 제11조,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